#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

2017. 6.



# 목 차

1.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1
2.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5
3. 의료인 결격사유 6
4. 의료인 등 폭행·협박 금지 ······ $7$
5. <b>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 8</b>
6. 직접 진료하지 않은 진단서, 처방전 발행 9
7. 기록 열람 11
8.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7
9. 무면허 의료행위 19
10. 환자유인행위 금지 21
11. 의료기관 외에서 행한 의료행위 23
12. <b>의료기관 개설 주체 ······ 24</b>
13. 중복 개설 금지 27
$14$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시 처벌 수위 $\cdots$ $28$
15. 과장 광고 금지
16.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
17. 기타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

###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

# 1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 □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패용을 의 무화 하는 의료법이 2017. 3.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 간호조 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 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 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바, 2017. 5. 11.에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공포되었으므로 2017. 6. 11.부터 각 지자체에서 명찰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이 시작됩니다.
- □ 명찰 착용 대상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관련]
  - ㅇ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o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ㅇ 간호조무사
  - ㅇ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 의료기관 내 사무장·코디네이터·피부관리사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력 등은 명찰패용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에서 선택해 서 명찰을 착용하면 됩니다.
- □ 명찰착용 가이드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조 관련]

-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붙임자료 #2】의 아래 표의 기준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찰을 표시하면 됩니다. 즉 기준만 충족하면, 뒤에 "의사(원장)" 또는 전문의인 경우, "내과 교수, 내과 과장" 등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 기준사항(표 참조)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분	착용대상	기준 (최소	 ≿규정)	예시
	의사	( <mark>공통)</mark>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u>의사</u> <u>홍길동(○)</u> - 원장 <b>홍길동(※)</b> - Dr. 홍길동(※)
의료인	(의, 치, 한)	(선문의 경우) 저무과모병 며치+서며		- <u>내과</u> 의사 <u>홍길동(○)</u> - <u>내과</u> 교수 <u>홍길동(○)</u> - <u>내과</u> 전문의 <u>홍길동(</u> ○)
	간호사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u>간호사</u> <u>홍길동</u> (○) - RN 홍길동(※)
	조산사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성명	- <u>조산사</u> <u>홍길동</u> (○)
학생	학생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 <u>의과대학생 홍길동(○)</u> - <u>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u> - 학생 홍길동(※)
의료 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사의 종류	별 명칭+성명	- <u>물리치료사</u> <u>홍길동</u> (○) - 물치사 <b>홍길동(※</b> )
간호 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의 명칭	칭+성명	- <u>간호조무사</u> <u>홍길동</u> (○) - 간조사 홍길동(※) - AN 홍길동(※)
		[ 추 가	- 예 시 ]	
	가능			불가능
	- (의료기관 명칭) <u>의사</u> 홍길	<u>일동</u> (○)	- (의료기관 명	령칭) 원장 <u><b>홍길동</b> (★</u> )
	- (의료기관 명칭) 원장 <u>의</u> ,	<u>사</u> 홍길동 (O)	- (의료기관 명	령칭) 대표원장 <u><b>홍길동</b>(</u> ✗)
	- (의료기관 명칭) <u>의사</u> 대	표원장 <u>홍<b>길동</b></u> (O)		
	- (의료기관 명칭) <u>의사</u> Dr	.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	경칭) <u>의사</u> Gil-Dong Hong (ێ)
	- (의료기관 명칭) <u>의사</u> (Doctor) <u>홍</u>	일동(Gil-Dang Hang)(O)	- (의료기관 Do	octor Gil-Dong Hong (🗶)
	- (의료기관 명칭) <u><b>의사</b>(</u> 醫師)	<u>홍길동</u> (洪吉童)(〇)	- **Hospital [	Doctor Hong (🗶)
OTHFOL	→ 고시 제1조 제6항에 따라 현	한글로 기재함이 원칙,	- (의료기관 명	령칭) Doctor <u>홍길동</u> (✗)
일반의	영어 병기 가능	- (의료기관 등		령칭) Dr. <u><b>홍길동</b></u> (✗)
			- (의료기관 명	령칭) Staff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	령칭) 醫師 洪吉童 ( <b>ێ</b> )
	 	미닌 <b>이사 호기도</b> (△)		
	- (의료기관 명칭) 건강의학센			
	(14712 00) 20412	- <u> </u>		

	→ 고시 제3조에 따라 소속부서명, 직위·직급을 추 가표시 가능	
	- (의료기관 명칭) 원장 <u>내과</u> 전문의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교수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u>홍길동(</u> → 법에서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신분 을 나타내는 '의사, 교수, 전문의 등'의 신분 명칭을 추가해야함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전문의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전문의 원장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전문의 대표원장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전문의 <u>홍길동(*)</u> - (의료기관 명칭) 전문의사 <u>홍길동</u> (*)
전문의 <b>※전문의</b>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과장 <u>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진료과장 <u>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진료부원장 <u>홍길동(〇</u> )	-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장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진료부원장 <u>홍길동</u> (*)
<u>는 위의</u> <u>'일반의'</u> <u>예시를</u> 포함하	- (의료기관 명칭) 내과학교실 <u>내과</u> 교수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내분비내과 <u>내과</u> 전문의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호흡기내과 <u>내과</u> 과장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내과학교실 교수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내분비내과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호흡기내과 <u>홍길동(</u> *)
<u>역</u> 사용가 <u>능</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과장 Dr. <u>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교수 Professor <u>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전문의 Prof. <u>홍길동</u> (〇)	- (의료기관 명칭) Heart specialist <u>홍길동(</u> <b>x</b> ) - (의료기관 명칭) 專門醫 <u>홍길동(</u> <b>x</b> )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Professor <u>홍길동(</u> <b>x</b> ) - (의료기관 명칭) <u>내과</u> Prof. <u>홍길동(</u> <b>x</b> )
학생 및 수련의 등	- (대학교 명칭) <u>의과대학생</u> 홍길동(〇) - (대학교 명칭) <u>의학전문대학원생</u> 홍길동(〇) - (의료기관 명칭) 내과(전공의) <u>의사 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내과(인턴) <u>의사 홍길동(〇)</u> - (의료기관 명칭) 내과(레지던트) <u>의사</u> 홍길동(〇)	- (의료기관 명칭) <u>내과 Dr.홍길동(</u> * )  - (의료기관 명칭) 학생 <u>홍길동(</u> * )  - (의료기관 명칭) 인턴 <u>홍길동(</u> * )  - (의료기관 명칭) 레지던트 <u>홍길동(</u> * )  - (의료기관 명칭) 전공의 <u>홍길동(</u> * )  - (의료기관 명칭) 의대생 <u>홍길동(</u> * )  - (대학교 명칭) 의대 <u>홍길동(</u> * )  - (대학교 명칭) 의대 <u>홍길동(</u> * )  - (대학교 명칭) 대학원생 <u>홍길동(</u> * )
기타	- (의료기관 명칭) <u>간호사</u>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IOJ(중환자실)간호과 <u>간호사</u>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간호사</u> / 간호과장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물리치료사</u> 홍길동(O) - (의료기관 명칭) <u>물리치료사</u> 실장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u>물리치료사</u> 실장 <u>홍길동(O)</u>	- (의료기관 명칭) 간호과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간호과장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물리치료실장 <u>홍길동(</u> *) - (의료기관 명칭) physical therapist <u>홍길동</u> (*)

- □ 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3조 관련]
  - o 가운의 자수와 목걸이 등 두 개 이상의 명찰을 패용하였을 시에, 동

규정에 따른 기준(명찰표시 내용)에 맞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정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도록 패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추가적인 패용의 경우 기재사항 등의 법적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수와목걸이 두 가지 방식으로 명찰을 패용하는 경우 의사 가운에 '의사 홍길동' 혹은 '내과전문의 홍길동'이라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면, 목걸이 패용방식의 명찰에 '원장 홍길동'이라 표기하여도 기준위반 등의 법적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두 개의 명찰 패용 시 표시기준 등 법적기재사항을 지킨 명찰의 분실 또는 훼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볼 수 없게 가려진 상황 등으로 인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질 소지 또한 있는바, 가급적 패용된 모든 명찰방식을 법적 표시기준에 맞추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 □ 명찰착용 예외[의료법 제4조 제5항 관련]

○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명찰착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

#### □ 명찰의 표시 방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관련]

-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 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o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 위반시 일정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시행령 별표2 제2 호 하목 관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장이 명찰관련 사항을 위반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o 만약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5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조문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있다. <신설 2016.5.29.>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을 금지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4조 제6항)
-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이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 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 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 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합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 자격이 일정기간 정지되며(제66조 제1항제2의2호), 특히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면허가 취소되오니(제65조제1항 제6호), 유의하셔야 합니다.

#### □ 관련법령

-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 ※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3 의료인 결격사유

- □ 의료인이 보건의료관련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합니다.
- □ 주의할 것은 <u>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해 금고이상 형을 선고</u> <u>받은 자에는 실형선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u> 료인 또한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 법 제8조 <i>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i>	제65조제1항	<u>면허취소</u>
<i><u>사유</u></i> 에 해당된 경우	제1호	

####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 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 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의료인 등 폭행·협박 금지

누	구든지	의료	.행위가	이투	트어지	는 정	<b>!소에서</b>	의료항	<sup></sup> 위를	행	하
는	의료역	인 및	의료기	관 총	증사자	또는	: 진료들	를 받는	사람	을	폭
행	또는	협박さ	하여서는	<u>-</u> 아૫	기되며	,(법	제12조	제3항)			

이를	위반히	누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여	에 처히	비집니	니다.(법	제82	7조제1형	}제2호	<u>-</u> )		

#### □ 관련 법조문

5

- ※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

- □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u>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예시</u> 하고 있습니다.
  - 일단 진료한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의사가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타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는 행위를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움
     (2000. 6. 2. 의정 65507-704)
  - ㅇ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이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이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이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 한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3)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제66조제1항	자격정지 1개월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제10호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직접 진료하지 않은 진단서, 처방전 발행

□ 의료업에 종사하고 <u>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u>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함)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진단서 등을 환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없이 잔단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만으로도 의료법에 위반된 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 만약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진단서·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8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2개월</u>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제10호	
발급한 경우		
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3개월</u>
<u>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u>	제3호	
<i>로 작성</i> 하여 발급한 경우		
6)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개월</u>
하여 <i>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i>	제10호	
<i>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i> 한		
경우		

###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 (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

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 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 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 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 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 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건안서 또는 증명서 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6.5.29.>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기록 열람

7

- □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은 환자 아닌 제3자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해 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 우에는 제3자에 대해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줄 수 있 습니다.
- □ 이에,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 의료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행 의료법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영장에 의 하지 아니한 임의제출에 대해서는 제출이 가능한 범위에 대 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의 <형사소 송법 제218조> 관련,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따르는 공/사익 의 이익 형량을 의료인 스스로 판단하여 공익을 위해 임의 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의 이익 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이 에 입ㆍ퇴원 및 외래내원 여부 같은 환자의 행적, 연락처 등 긴급하게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외에 진료과목, 처 치내용 등 질병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역은 일반적으 로 민감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의료법」및「개인정보보 <u>호법」에 위반될 수 있</u>어, 의료법 제21조제2항제6호, 형사소 송법 제218조를 근거로 수사협조를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개별 환자기록을 임의제출하려 한다면, 진료과목, 처치내용 등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법상 당사자 의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

<sup>1)</sup>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 형사 영장, 민사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환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장,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위 표 11항),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 □ 이를 위반한 경우 제21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이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함)(제88조), 제21조 제3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Т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i>환자에</i>	제66조제1항	<u>자격정지 2개월</u>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제10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선고유예		
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		
<u></u> = <u> </u>		
11)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i>환자에</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5일</u>
관한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	제10호	
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i>진료기</i>		
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i>소견 등을 송부</i> 한 경우		

#### □ 관련 법조문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9., 2016.5.29.>

-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 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하는 경우
-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 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 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 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 구한 경우
-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 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없이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시행일:2016.6.30.] 제21조제2항제15호

-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 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8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 2017년 6월 21일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3개 행위를 할경우에는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②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③ 설명 하는 의사 및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④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부작용⑤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다만,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 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 □ 또한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24조의2)
-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주로 행하시는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위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혹시 모를 분쟁 발생으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조문

- ※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 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 2017.6.21.] 제24조의2

### 9 무면이 의료행위

- □ <u>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u> 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7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6제1항제5	<u>자격정지 3개월</u>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호 및 제10호	
<u>하게 하거나</u>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30) <i>면허증을 빌려준 경우</i>	제65조제1항	<u>면허취소</u>
	제5호	
37) <i>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5일</u>
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제6호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i>의료인이</i>	제64조제1항제	<u>업무정지 3개월</u>
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2호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u>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u>		
<u>하게 한 경우</u>		

-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 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 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 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 2.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 10 환자유인행위 금지

-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 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 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법 제27조 제3항)
-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i>영리를</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2개월</u>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제10호	
<u>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u>		
<i>이를 사주하는 행위</i> 를 한 경우		

- □ 환자유인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ㅇ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자 환자유인행위 인정
- ㅇ 쿠폰 발행. 환자유인행위 인정
  - → 의료인이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금품(미백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토록 권유한 경우에는 위에 규정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 있음
- ㅇ 포인트 적립, 환자유인행위 인정
- 본인부담금 감면 할인하고, 공단급여비 청구하면, 환자유인행위 인정(본인부담금 면제하고, 공단 청구도 안하면 해당 사항 없음)
-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명칭 생략)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상담을 하거나 낙태수술 후의 후유증 등에 관하여 상담하면서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으니 빨리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그 화면으로 의료인의 경력과 병원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사)이 법률상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빨리 피고인(의사)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행위는 의료정보의 제공과 그 상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약속과 권유 및 안내를 통하여 낙태수술 등을 위한 의료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도2780 판결)

- 이 의사 A는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 → 환자유인행위 경품으로 제공하려던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은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단순히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할인, 면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

####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 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 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 11 의료기관 외에서 행한 의료행위

-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의료기관 외 에서 의료업을 행해서는 아니됩니다.(법 제33조 제1항)
-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2)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i>의료기</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3개월</u>
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	제10호	
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		
<del>\$</del> ,		

- □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ㅇ 보건복지부는 대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궁경부암백신을 접종한 사례 및 의료인이 교회에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한 사례에 대해 '의료기 관 외에서 의료업을 함'을 처분사유로 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한바 있으 며. 또한 왕진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해 당이 되나. 동 조항을 근거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진료(왕진)를 보는 행 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함.
- ㅇ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비위생적인 진료환 경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크고, 장비·시설·인력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법 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업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관 외 의료업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부득 이한 사정이 있어 환자나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요청 없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업은 허용되지 아니함.(서울행정법원 2012. 11.
  - 1. 선고 2012구합15791 판결)

-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2 의료기관 개설 주체

- □ 의료기관은 의사, 의료법인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포함)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됩니다. → 불법 사무장 병원!! 주의 요망!!
- □ 제33조 제2항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과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의 벌금(법 제87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에 따 라 의료인도 공동정범으로 처리됨)
  - → 이 부분은 개설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설자는 이외에 도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특히 개설자는 경합범으로 처리되므로 실질

적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법 제8조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 → 이 부분은 봉직의나 간호사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36) <i>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3개월</u>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제2호	
4) 다음의 <i>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i>	해당 처분기준의	
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위반행위를 자진	<u> 3분의 2의</u>	
<u>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u>	범위에서 감경	
서 진술·중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		
<u> 4</u>		
<u>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u>		
<u>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u>		

- □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례 및 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면서 비의료인으로부터 의료 기기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의료기기의 할부금과 월 임대료 및 일 정한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 위의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
- o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개설하거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 동개설할 수도 있음(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 2008. 12., 125쪽)

ㅇ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함)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 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 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제2항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 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 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2.12.14. 선고 81도 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 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 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 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와 같이 생협법인 생협조합의 보건 · 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 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 · 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ㆍ의료사업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 ·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2014.8.20. 선고, 대법원 2012도 14360 판결)

#### □ 관련 법조문

####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없다. <신설 2012.2.1.>
-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

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료공단」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제목개정 2012.2.1.]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 13 중복 개설 금지

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 □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7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신고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개설자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2) <u>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u>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3개월</u>
<u>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u>	제10호	

- □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가 되는 것은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실질 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 위반됨(법제처 유권해석 13-0051, 2013. 4.30.)

#### □ 관련 법조문

#### ※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없다. <신설 2012.2.1.>
-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4 물범 개설 의료기관 적발시 처벌 수위

□ 비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거 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 개설한 경우

-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ㅇ 처 벌
  - [비의료인]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33조 제2항2) 및 제87조 제1항 제2호3)
- □ 비의료인이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면허대여행위로써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현재 일반적으로 통칭되 는 사무장병원)
  -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비의료인(정범),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4조 제4항, 제65조 제1항 제4호, 제87조 제1항 제 2호[의료인(정범)]
  - ㅇ 처 벌
    - [비의료인]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33조 제2항4) 및 제87조 제1항 제2호5)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3)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호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sup>2)</sup>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 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빌려준 의료인]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4조 제4항이, 제87조 제1항 제1호
  - ② 행정처분 : 면허취소
  - ·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7)
- □ 비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어 의료기 관을 개설하였으나 의료인은 자신이 직접 진료할 목적으로 그리한 경우

#### ㅇ 위반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비의료인(정범), 빌려준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다른 의료인 이 이중개설일 경우(정범), 빌려준 의료인(공범)]
- 의료법 제4조 제2항8)[다른 의료인(정범)] : 처벌규정 없음

#### ㅇ 처 벌

<sup>4)</sup>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 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sup>1.</sup>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sup>2.</sup>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sup>3.</sup>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sup>4. 「</sup>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sup>5. 「</sup>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 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sup>5)</sup>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up>1.</sup>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sup>2.</sup>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sup>6)</sup>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④ 의료인은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sup>7)</sup>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sup>4.</sup>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sup>8)</sup>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비의료인]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다른 의료인] : 이중개설시, 이중개설 아니면 처벌 없음
  - ① 형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료법 제33조 제8항9)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 ② 행정처분 : 면허취소 or 자격정지 3개월
  -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의 적용을 받아 면허취소,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정지 3개월
  - · 그러나 이 경우의 면허취소는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이중개설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빌려준 의료인]
  - ① 형벌: 의료법 제90조
  - ·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벌금 500만 원(의료법 제90조<sup>10)</sup>)
  - ·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 없음
  - ② 행정처분 :
  - · 비의료인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 조 제1항 제2호<sup>11)</sup>)
  - · 의료인에게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 없음

<sup>9)</sup>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sup>10)</sup>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sup>11)</sup>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sup>2.</sup>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③ 의료인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시 공동 정범으로 처벌 가능(형법 제30조)
- ※ 빌려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나 다른 의료인 간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면 빌려준 의료인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인 경우)<sup>12)</sup>이나 제8항(의료인인 경우), 제87조 제1항 제2호<sup>13)</sup>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되고, 이를 근거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여지가 있음.
- ※ 그러나 빌려준 의료인에게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 면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비의료인인 경우 자격정지처분에 처 해짐.
- ※ 문제는 명의대여의사가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집행유예 포함해서), 당연히 의료법상 결격사유로 포함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지 이것이 곧 의사가 비의료인 등에게 고용 되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반면 의료인 에게 고용된 경우는 행정처분 없음.
- □ 단 해당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법 제66 조제5항)
- □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 비의료인에게 부당이득 연대환수(동조 제2항), 수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sup>12)</sup>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 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sup>1.</sup>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sup>13)</sup>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up>1.</sup>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sup>2.</sup>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5 과장 광고 금지

-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과 장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 □ 만약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시에는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법 제63조),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0) 법 <i>제56조제2항(제7호와 제9호는</i>	제64조제1항	<u>업무정지 1개월</u>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제5호	
경우		
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	제64조제1항	업무정지 2개월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i>거짓된 내용</i>	제5호	
의 광고를 한 경우		
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	제64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i>과장된 내용</i>	제5호	
<i>의 광고</i> 를 한 경우		
24) 법 제5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	제64조제1항	업무정지 1개월
고를 한 경우	제5호	

###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4.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 를 누락하는 광고
-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 로 표현되는 광고
-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위헌)
-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 12.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 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③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와 제3항을 위반한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단순위헌, 2015헌바75, 2015.12.23.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 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아니한 광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 2010.1.27., 2012.4.27.>
  -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 2.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
  - 3.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 는 것
  -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 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 고하는 것
  -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 7.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 8.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거나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10.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 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 료광고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 16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

- □ 2016. 5. 29.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그 처분사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경우에는 그 시효를 7년으로 하는 의료법 제66조제6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 위의 의료법 제66조 제6항의 신설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보 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유 발생 일로부터 5년 또는 7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5년 또는 7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
- □ 또한 이 법 시행 전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부칙 제4 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로, 설사 개정법에 따른 시효기간 도과 후 행정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소 급하여 위법·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 그러나 이 법 시행 전, 개정법에 따른 시효기간이 도과한 사 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처분

- 의 확정통지를 받기 전이므로, 개정법 시행 후에는 더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 또한 이 법 시행 전, 개정법에 따른 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유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확정통지를 받았으나, 실제처분 시점은 개정법 시행 후라 하더라도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받은 이상, 처분이 진행될 수있습니다.
- □ 시행일 : 2016. 5. 29.
- □ 관련 법조문
- ※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 3. ~ 10.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8조제5항, 제21조제2항제1호·제3호, 제36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제56조제2항제11호,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92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3조(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제1 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 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17 기타 유의해야 할 행정처분

#### □ 진료기록부 기재 관련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3) 법 제22조제1항을 <i>위반하여 진료기</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5일</u>
록부등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10호	
1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i>진료기</i>	제66조제1항	<u>경</u> 고
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0호	
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i>진료기록부등</i>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개월</u>
<i>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i>	제3호 및	
<u>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u>	제10호	
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u>경우</u>		

### □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의 의료행위 등 관련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28) 법 제66조에 따른 <i>자격정지처분기</i>	제65조제1항	<u>면허취소</u>
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제2호	
<u>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u>		

### □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관련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31) <u>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u>	제66조제1항	<u> 자격정지 1개월</u>
<u>료행위를 한 경우</u>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32) <u>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u>	제1호 제66조제1항	<i>자격정지 1개월</i>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33)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제2호 제66조제1항	경 고
진료를 한 경우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34) <i>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i>	제4호 제66조제1항	· 1차 위반 : 자격
<u> </u>	제1호 및 영	정지 1개월
	제32조제1항	· 2차 위반 : 자격
35) <u>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u>	제4호 제66조제1항	정지 3개월 <i>자격정지 2개월</i>
<u>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u>	제1호 및 영	
	제32조제1항	
	제5호	

###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 관련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i>부당한</i>	법 제66조제1항	부표 2와 같음
<u>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u>	제9호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2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3차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4차 이상	_	자격정지 12개월

### □ 진료비 거짓 청구 관련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정처분기준
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제66조제1항	부표와 같음
속임수 등 <i>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i>	제7호	
<i>거짓 청구</i> 한 경우		

#### [부표 1]

####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단위:월)

월평균 거	짓청구금액			거 짓 청	구 비 율		
의료기관	보 건 의 료 원 , 보 건 원, 보 건 지 소, 보건진료소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12만원 미만	4만원 미만	_	_	1	2	3	4
12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_	1	2	3	4	5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 1	2	3	4	5	6
4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	3	4	5	6	7
16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3	4	5	6	7	8
7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3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5	6	7	8	9
2,5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5	6	7	8	9	10

비고

- 1.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진료급여비용을 거 짓으로 청구한 금액과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액을 거짓으로 청구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거짓청구비율(%)은 (총 거짓청구금액/진료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다만, 총 거 짓청구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거짓청구금 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되, 그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총 거짓청구금액	행정처분기준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0개월
1,7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9개월
1,2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7개월
55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50만원 이상 ~ 550만원 미만	자격정지 5개월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 진료급여비용 총액은 조사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에서 심사·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보장기관에 통보한 진료급여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